# 전기공사 시방서

공사명 : 1관 2층 동편 공간조정 공사(전기)

2023. 11.

조선대학교병원

## 목 차

### 제1장 총 칙 제2장 옥내 설비공사

- 1.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공사
- 2. 배선기구 공사
- 3. 배관 공사
- 4. 배선 공사

#### 제 1 장 총 칙

#### 1. 적용범위

본 시방서는 1관 2층 동편 공간조정 공사(전기) 시설공사 전기공사에 적용한다.

본 공사의 시공 중 특기 시방서 또는 공사 도급계약서(현장 설명서 포함)에 별도로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공사별로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한다.

#### 2. 관계법규

- 가.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법령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.
  - (1) 전기 설비 기술기준령 및 K.S 규정
  - (2) 전기 설비 규정
  - (3) 소방법 및 이외 부속법령
  - (4) 건축법 및 이외 부속법령
  - (5) 건설교통부 발행 전기공사 표준 시방서
  - (6) 감리원(감독관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법규
- 나. 본 공사에 대한 시방서가 각항 각호에 열거한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, 만약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.
- 다. 본 공사에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취지에 따라 감리원(감독관)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.

#### 3. 전기공사 감리원(감독관)

감리원(감독관)이란 건축주 측의 관계 감독관 및 건축주 측에서 의뢰한 감리원을 말한다.

#### 4. 전기공사 기술자

- 가. 전기공사업법이 규정하는 공사기사를 공사장에 상주시키고 감리원(감독관)의 지시에 따라 시공 업무와 안전관리 보안책임을 감독하여야 한다.
- 나. 전기공사의 시공은 감리원(감독관)이 인정하는 유능한 기능 보유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다.

#### 5. 시공관리

- 가. 도급자는 본 공사 착공시에 아래 사항을 감리원(감독관)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.
  - (1) 착공계
  - (2) 현장대리인계
  - (3) 현장대리인 이력서
  - (4)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
  - (5) 계약 내역서
  - (6) 예정 공정표
  - (7) 안전관리 계획서(소정양식 : 해당 공사한)
- 나. 도급자는 아래 사항의 공사 기록서를 감리원(감독관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(1) 감리원(감독관)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
  - (2) 공사진도 보고서
  - (3) 기타 감리원(감독관)이 요구하는 사항
- 다. 도급자는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사전에 감리원(감독관)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감리원(감독관)의 사정 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.
- 라. 도급자는 전기산업기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상주시켜 감리원 (감독관)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마. 본 공사의 현장 대리인은 아래의 서류를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 감리원(감독관)의 지시를 받아야한다.
  - (1) 공사감독 일지
  - (2) 감리원(감독관)지시서
  - (3) 지급자재 검사부
  - (4) 안전관리 점검부(해당 공사한)
  - (5) 작업일지
  - (6) 사급자재 수불부(해당 공사한)

#### 6. 기기 및 재료

- 가.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.
- 나. 본 공사에 사용하는 K.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 K.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재 중 최우량의 질을 사용하되 감리원(감독관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다. 본 공사에 이용하는 자재 중 감리원(감독관)이 별도로 지정하여 시험소의 시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시험소에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라. 본 공사의 제작사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리원(감독관)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견본을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마. 견본 제품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카다록 또는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바.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파손 및 오손되지 않도록 하며, 습기에 부식되지 않도록 건조한 상 태로 잘 보관해야 한다.

#### 7. 시공의 입회

- 가.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또는 감리원(감독관)이 지적하는 공사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야 한다.
- 나.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배관을 할 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리원(감독관)의 검사를 받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하도록 한다.
- 다. 접지공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감리원(감독관)이 입회한 가운데 시행하고 접지 저항치를 측정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#### 8. 관공서, 기타의 수속

전기 관계법령에 규정된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 일체는 본 공사 시공자가 하며, 수속 도중에 진행사항을 감리원(감독관)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
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.

#### 9. 공사현장 관리

- 가. 본 공사 시공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종업원, 기타의 출입감독 및 화재, 도난, 기타 사고 방지와 시공 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- 나. 본 공사 시공자는 재해 및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 피해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, 타 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감리원(감독관) 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의 없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.

#### 10. 공사보고

공사의 지도, 종업원의 취업상황, 기자재의 검사 상황 등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보고서를 매일 감리원(감독관)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# 11. 안전관리(해당 공사한)

- 가. 본 공사의 시공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며, 수시 안전 관리 사항을 감리원(감독관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나. 본 공사의 시공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해 안전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다. 본 공사의 시공자는 전기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에 경고 표시를 하여 외부인 의 접촉 및 출입을 막아야 한다.

#### 12. 종말처리 및 준공도 작성

- 가. 본 공사 중에 건축 변경 또는 해당법규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공사를 불가피하게 변경 시공하여 야 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리원(감독관)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하도록 한다.
- 나. 본 공사 시공자는 공정별로 중요 공사 부분의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, 사진 촬영 기준은 건축 특기시방서에 준한다.
- 다. 시공자는 본 건물의 준공 시 보수 관리를 위하여 약 3개월간 기술진을 상주시켜 건축주 운용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.
- 라. 시공자는 본 건물에 시설되는 전기 설비의 중요 기기에 대하여 기기 납품자로부터 받은 예비품 명세서 및 보수 지침서와 운전지침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.

마. 본 공사에 시공하는 모든 자재는 사용 15일 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감리원(감독관)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.

#### 13. 기타 사항

- 가. 공사 완료 후 건축물 내외의 청소 및 기재 종말처리를 완전히 한다.
- 나. 본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 변경 등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본수 관리가 편리하 도록 준공도를 작성하여 백도 2부 및 저장장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 2 장 옥내 설비공사

#### 1.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공사

- 가.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박스는 1.6mm 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박스는 2.0mm 이상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.
- 나. 300mmx300mmx200mm 초과의 박스는 반드시 보강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.

(보강재 30x30x3t "L"형강)

- 다.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는 2회 이상의 방청도장을 시행한후 명회색 또는 지정색 도장을 하여야한다.
- 라. 각종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에는 점검 및 보수시 편리하도록 용이하게 지워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서 전선 ROUTE의 식별이 가능하게 간선 번호 또는 귀속 분전함의 명칭이 표시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.

#### 2. 배선기구 공사

- 가. 단극 점멸기는 전압선에 접속한다.
- 나. 콘센트는 상부 소공단자에 전원을 접속하고 하부 접지극에 접지선을 접속한다.
- 다. 단극 점멸기는 연용 점멸기를 사용하고, 플레이트는 컬러 플레이트를 사용한다.
- 라. 배선기구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다음의 정격의 것을 사용한다.
  - (1) 텀블러 스위치: 250V 15A 연용 매입 스위치 (컬러배선기구)
  - (2) 콘 센 트 (컬러배선기구)

정격전압 200 - 220V시 : 250V 15A 둥근형 측면 접지극부

정격전압 100 - 120V시 : 150V 15A 접지극부

(3) 플레이트 : A.B.S 수지 제품으로서 컬러 플레이트

#### 3. 배관 공사

- 가. 금속관 공사
  - (1) 전선관은 KSC-8401에 의한 K.S표시품이어야 한다.
  - (2)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.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

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.

K. S 번호	규 격 명 칭
C - 8402	붓싱(전선관용)
C - 8403	새들(전선관용)
C - 8404	록너트(전선관용)
C - 8406	노말밴드(전선관용)
C - 8407	유니버설휘팅(전선관용)
C - 8408	서비스캡(전선관용)
C - 8409	터미날캡(전선관용)
C - 8410	카프링(전선관용)
C - 8411	아웃트랫트 박스(전선관용)
C - 8412	노출스위치 박스(전선관용)
C - 8413	환형노출박스(전선관용)
C - 8414	스위치 박스(전선관용)
C - 8415	특수아웃트랫트 박스(전선관용)
C - 8416	박스카바(전선관용)
C - 8417	절연붓싱(전선관용)
C - 8418	접지용 부속품(전선관용)
C - 8419	알미늄 전선관(전선관용)
C - 8421	엔트란스캡(전선관용)
C - 8427	유니온 카프링(전선관용)
C - 8438	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통칙(전선관용)
C - 8442	카프링(알루미늄 전선관용)
C - 8443	엘보우(알루미늄 전선관용)

(3)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(HFIX전선일때는 같은 도체굵기의 고무절연전선의 단면적)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%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.

(통신케이블인 경우는 25% 이하)

- (4)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- (5)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  다만,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
  그렇치 않아도 된다.
- (6)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.
  - (가)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: 8각(깊은형)
  - (나)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: 중형4각(깊은형)
  - (다)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중형 4각 박스임.

- (7)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.
  - (가)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리원(감독관)의 지시에 따르고 건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
  - (나)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. 1구간의 굴곡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어서는 안되며 90 도 굴곡부분에서는 28C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.
  - (다)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 이내로 한다.
    단, 관끝, 관상호간의 접속점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.
  - (라)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(통신배관은 20m를 넘는 경우)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.
  - (마)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하여 금속제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 하여 야한다.
  - (바)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로 배관을 피하고 감리원 (감독관)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.
  - (사) 풀박스 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.
- (8)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"(7)"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.
  - (가)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 할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.
  - (나)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,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 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게 하여 감리원(감독관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때는 감리원(감독관)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.
  - (다)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.
  - (라)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.
- (9) 스위치,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에는 스위치박스,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.

- (10)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휀 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리원(감독관)의 지시에 따라 인서트, 픽스츄어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.
- (11)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하며 플라스틱 커버와 마감면이 6mm이상 떨어졌을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.
- (12)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.
- (13) 감리원(감독관)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.
- (14)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.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, 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.
- (15)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한다. 단.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.
- (16) 노출금속관 공사에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.
- (17) 관로에 물기,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캡, 퓨시캡 또는 나무마개 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양생한다.
- (18)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부분에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감리원(감독관)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.
- (19)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때까지 관내에 습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는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, 전선 인입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.
- (20)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이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하여 배 관 공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21) 1차 및 2차 공사가 구분되어진 곳에서는 JOINT BOX를 설치하고 2차공사시 배관 연결에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.

#### 나. 합성수지관 공사 (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)

(1)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K.S 번호	규 격 명 칭
C - 8431	경질 비닐전선관
C - 8432	경질 비닐전선관용 부품시험방법
C - 8433	커프팅(경질비닐전선관용)
C - 8434	콘넥타(경질비닐전선관용)
C - 8435	새 들(경질비닐전선관용)
C - 8436	박 스(경질비닐전선관용)
C - 8437	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통칙
C - 8439	박스커버(경질비닐전선관용)
C - 8440	캡(경질비닐전선관용)
C - 8441	노말밴드(경질비닐전선관용)

- (2)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전 "(1)"항에 의한다.
- (3) 배관의 부설은 "가"의 "(7)"항 및 "(8)"항에 의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.
  - (가)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 등을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때는 감리원(감독관)의 지시에 따른다.
  - (나) 관을 가열할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.
  - (다)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 한다.
- (4) 관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.
- (5)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.2배(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.8배) 이상으로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한다.
- (6)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를 사용해서 시공한다.
- (7) 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.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.

#### 다. 가요전선관 공사

- (1)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. 단,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(2)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K.S 번호	규 격 명 칭
C - 8422	플렉시블콘디트(강제)
C - 8423	플렉시블용 카프링
C - 8424	플렉시블용 콘넥타
C - 8429	절연붓싱(플렉시블 콘디트용)

- (3)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(감독관)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.
- (4)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,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 하여야 한다.
- (6) 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.
- (7) 가요전선관을 금속관, 금속몰드등과 연결할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,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.
  - (비방수형-PVC콘넥타, 방수형-금속제 방수형 콘넥타사용)
- (8)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고 그 간격은 1m 이내로한다. 관끝,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.3m 이내에서 관을 고정한다. 단, 수직으로 부설할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(감독관)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.

#### 라. 맨홀 및 핸드홀의 설치

- (1) 맨홀 및 핸드홀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하부에 물이 나갈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.
- (2) 맨홀 및 핸드홀의 벽에는 목재 또는 자기재의 지지물을 설치하여 케이블을 지지 하여야 한다.

#### 4. 배선 공사

- 가.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 사항이 없는한 HFIX 전선을 사용한다.
- 나.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선(비접지측)에 연결하여야 한다.
- 다.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라.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이 있어서는 안된다.
- 마. 전선의 접속은 전기사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%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된다.

- 바.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하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.
  - (1) 비닐전선의 단말 피복은 와이어 스트립퍼를 사용하거나 또는 연필의 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.
  - (2) 케이블이나 고무절연 전선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기고 단의 표준길이는 다음에 의한다.

저 압 25㎡ 이하 ----- 단 벗김길이 10mm

저 압 35㎜ 이상 ----- 단 벗김길이 15mm

사.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 접속단자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.

단. 6.0㎜ 이하의 심선 상호접속에는 와이어 콘넥타를 사용한다.

아. 비닐절연 전선 및 고무절연전선 또는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 전선의 색별은 다음에 의한다.

(1) 1ø 2W : 접지측선(청,녹색), 전압선(갈색)

(2) 1ø 3W : 접지측선(청,녹색), 전압선(갈색, 흑색)

(3) 3ø 3W : 접지측선(청,녹색), 전압선(갈색, 흑색, 회색)

(4) 3ø 4W : 접지측선(청,녹색), 전압선(갈색, 흑색, 회색)

자. 전선관류의 기재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의한다.

KS 번호	명 칭
C - 3103	연동 연선
C - 3302	비닐 절연 전선
C - 3607	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사이즈 전력케이블
C - 3313	옥외용 비닐 전선
C - 3608	종이 절연 연피 시내 케이블
C - 2305	비닐 테이프
C - 2304	고무 테이프
C - 2302	면 고무 테이프
C - 2618	압착 단자
C - 2619	동제 각종 단자

- 차. K.S 규격품이 없는 기재는 감리원(감독관)의 지시 제품을 사용한다.
- 카. K.S 규격품이 2이상일때는 감리원(감독관)이 지시하는 것을 사용한다